

[별표 2]

다중이용시설(제2조제1항제17호 관련)

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·전문점·백화점·쇼핑센터·복합쇼핑물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
2. 「항공법」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4. 「철도건설법」에 따른 철도 역사(驛舍)
5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
6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호텔업,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·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
7.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른 경마장
8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
9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
10. 「항만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종합여객시설
11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중 그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시설